

KOSHA GUIDE

H - 178 - 2022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2022.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부산가톨릭대학교 문찬석 교수
개정자 :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

- 제·개정 경과
 - 2015년 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22년 12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정혜선 등.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 정혜선 등.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2018
 - 고용노동부. 우리 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알기 쉬운 휴게시설 설치 A to Z, 2022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22년 12월 31일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휴게시설”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을 의미한다.

(나) “휴식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된다.

(다) “도급인”이라 함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 (라)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마) “관계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바) “공동휴게시설”이라 함은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 “동시 사용인원”이라 함은 동일한 휴게시간 내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수의 최대 합을 의미한다.
-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휴게시설 설치 대상

4.1. 대상 사업장

- (1) 휴게시설은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 (2)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나)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다)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4.2. 휴게시설 설치 주체

-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단,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한다.
- (2)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3. 도급을 주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방법

(1)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가)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나)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도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 또는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나)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4. 파견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게시설

- (1)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포함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2)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까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 (3)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5. 휴게시설 설치 기준

5.1. 크기

(1) 최소 바닥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

(가)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되며, 다수 설치하는 경우 모든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라)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1m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여 최소면적을 판단한다.

(2)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최소면적

(가) 사업장별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휴게시설의 크기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공동휴게시설은 우선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정한 후, 공동휴게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장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여 공동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을 정한다. 이 경우에도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이어야 한다.

(3) 휴게시설 동시 사용인원 산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교대 근무를 할 경우 1일 근무조 중 1개조의 인원을 제외하고 휴게시설 사용인원을 산출할 수 있으며, 휴식주기가 다른 경우에도 휴게시설 사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사무실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공간에서 일하는 사무직의 경우 휴게시간 동안 업무관련자의 방문, 전화통화 같은 업무에서 일체의 방해받지 않는다면 휴게시설 사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 휴게시설 사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을 권하지만,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으며, 공간 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한다.

5.2. 위치

(1) 거리

(가)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나)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감안해 노사가 협의하여 작업장소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충분히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식시간(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휴게시간의 20%를 넘더라도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 공간 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왕복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외부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마) 업무 특성에 따라 위생시설(세면·목욕·세탁·탈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게시설은 가급적 위생시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

(2) 안전한 장소

(가) 휴게시설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나)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다.

5.3. 온도, 습도, 조명, 환기, 소음

- (1) 적절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휴게실 바닥이 좌식인 경우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 (2) 적절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근로자의 휴게시간 동안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장마기간, 건조특보 발효 기간 등)는 제외한다.
- (3)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자연 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밝기(100~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간접등이나 커튼을 설치하여 조도를 조절할 수 있다.
- (4)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명을 상시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온·오프 기능을 갖추면 된다.
- (5)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켜 쾌적한 공기 질을 확보할 수 있고,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6)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을 관리한다.

5.4. 마감재

- (1)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2) 바닥과 벽은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한다.
- (3)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휴게시설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가급적 시각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6. 휴게시설 관리 기준

6.1. 비품 구비 및 표지 부착

(1) 가급적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비치한다. 다만,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지 않아도 된다.

(2)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 등을 구비한다.

(3) 휴게시설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충분히 제공하고, 부족한 경우 수시로 보충한다.

(4)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장 등은 별도로 확보한다.

(5)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한다.

6.2. 관리 담당자 지정

(1)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장별 관리방법(주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등을 실시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한다.

6.3. 관리 규정 마련 및 예산 배정

- (1) 휴게시설 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 (2) 사업주는 휴게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6.4. 목적 외 사용금지

- (1) 휴식시간에는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2)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 (3)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에 대해 사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적, 간헐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5.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1)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공장동·사무동·복지동 등)의 연면적 및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경우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건축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도, 공용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삼는다.
- (2) 긴급 도로보수작업, 맨홀작업, 가로수 정비, 전기통신작업 등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해 그늘막·천막·몽골텐트 등으로 휴게시설을 간이로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환기기준을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3) 선박 블록 하부 등 작업 위치가 높거나 깊어 작업장소 바깥에 있는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작업 근로자도 작업 위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설은 고정형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습도 등의 기준은 제

외하고 설치 할 수 있다.

7. 휴게시설 이용 문화

7.1. 휴게시설 이용 원칙

- (1) 여러 직종과 직급이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 (2) 업무강도가 높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3)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와 공동으로 휴게시설 사용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7.2. 불편사항 개선

- (1)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휴게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 (2)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미비한 사항은 시정조치한다.

<부록>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 다음의 항목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하십시오. ‘예’ 대답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대답은 조사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구분	점검 항목	예	아니오
크기	-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 -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 × 사업장 개수		
	-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 교대근무,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경우 협의 면적을 최소 면적으로 함		
위치	- 휴식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		
	-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 넘지 않는 곳에 위치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위치		
환경	온도	- 적정 온도 유지(18~28℃)	
	습도	- 적정 습도 유지(50~55%)	
	조명	- 적정 밝기 유지(100~200Lux)	
	환기	- 창문 등을 통한 환기 실시, 환기설비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질 확보	
	소음	-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소음	
	마감재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쉽게 더럽혀지지 않으며, 청소하기 쉬운 재료 사용	
비품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은 별도로 확보		
표지 부착	-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관리	- 관리담당자 지정		
	-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예산 배정		
	-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이용문화	-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업무강도가 높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 우선 이용		
	- 불편사항 개선		
	-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활용		

지침 개정 이력

□ 개정일 : 2022. 12.

- 개정자 :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
- 개정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KOSHA GUIDE를 개정함
- 주요 개정내용
 - 휴게시설 설치대상을 명시함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 휴게시설의 관리기준을 명시함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 휴게시설 이용문화를 명시함
 -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18)
 -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를 수정함
 - ↳ 알기 쉬운 휴게시설 설치 A to Z(고용노동부, 2022)